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592
------------	------

2024년 3월 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한 신 의원 외 13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2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3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한 신 의원)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범위에 대해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명시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14. ~ 2024. 2. 18.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sup>1)</sup>

- 제출의견 : 수정가결

---

1) 택시정책과-6957호(2024. 2. 22.)

- 현재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범위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조례로 확정하는 것 보다는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

※현재 장애인콜택시 대상자, 방법, 요금 등을 고시함

- 따라서, 향후 환경변화시 유연하게 운영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 제2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경기도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운영범위를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까지 확대<sup>2)</sup> 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 참고 : 동 개정안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구 분		당 초	확 대
운영범 위	관내	서울시내	-
	관외	(인접 12개 市)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b>19개 시·군 추가</b>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국제공항	<b>인천광역시 추가</b>

※ 일부 도서지역은 목적지가 속한 행정관청 등 협의된 환승지점까지 이동 지원

- 인천: 강화(성동검문소), 옹진(남동체육관), 영종(공항철도 운서역),
- 경기: 제부도(시흥시청), 대부도(안산시청)

#### 2) <기존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 서울시내, 인접 12개 市(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인천공항

#### <추가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 기존 운행 범위에 추가로 19개 시·군(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서울시와 서울시 인접 12개 市<sup>3)</sup> 및 인천국제공항을 운영범위로 운행해 왔으며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해당 관내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음
- 그간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교통약자들의 환승·환승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인근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도록 관련 법 제16조제7항<sup>4)</sup>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나목<sup>5)</sup>에서는 특별시의 경우

- 
- 3) 서울시 인접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⑦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 5)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시·군 및 도를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 서울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추진계획’<sup>6)</sup>을 수립하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탑승대상, 운행시간 등에 대한 통일기준안<sup>7)</sup>을 마련함과 동시에 3개 지자체 간 협약<sup>8)</sup>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30대를 투입하여 광역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별첨1 참조]
- 따라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의 구체적인 운영범위를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로 추가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sup>9)</sup>에서 운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할 것으로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확대를 도모하여 장애인들의 광역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다만, 현재 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가 협의한 특별교통수단의 운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50호, 2024. 1. 16., 일부개정]

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추진계획’ 택시정책과-45800(2023. 12. 15.)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복지협약체 3차례 개최 : 2023. 2. 22. ~ 11. 23.

- 수도권 광역이동 실무협의 7차례 진행 : 2023. 6. 27. ~ 11. 15.

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 운영 기준(안)’

- 요금, 탑승대상, 운행시간 등 운영 기준

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서> (2023. 12. 19.)

9)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범위는 경기도·인천광역시 전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일부 도서 산간지역<sup>10)</sup>은 목적지 인근까지로 범위를 일부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로 운영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지역을 운행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부 보완도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서울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추진계획’<sup>11)</sup>을 통해 1단계 시범사업을 경기도·인천광역시와 함께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운영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 운영 기준(안)’ 제6조<sup>12)</sup>에서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10) 도서지역 : <인천> 강화(성동검문소), 옹진(남동체육관), 영종(공항철도 운서역), <경기> 제부도(시흥시청), 대부도(안산시청)

1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추진계획’ 택시정책과-45800(2023. 12. 15.)

① 1단계 : 수도권 광역이동 시범사업(‘23.12.21.~) ② 2단계 : 수도권 광역이동 장애인콜택시 요금 일치(‘24.7.1.~) ③ 3단계 : 수도권 광역이동 확대(‘25.1.1.~)

1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 운영 기준(안)’ 제3장 수도권 광역이동 운영 제6조(운행지역) ① 광역이동 특별교통수단은 수도권 공동운영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운행한다. ② 다만 일부 도서지역은 최종 목적지가 아닌 목적지가 속한 시·군·구 관할 행정관청 또는 인근 지정시설까지 이동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별 관내 이동지원센터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관내 특별교통수단으로 연계하여 이동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별첨 1]

##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 운영 기준 협의 요약

구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특장차 총운행대수	692대	215대	1,205대	
광역지역	기존	관내+인접 지역 (부천,김포,양주 등 12개시)	관내+인접지역 (시·군·구 별도 운행)	
	확대	서울 · 인천 · 경기 전역		
	* 일부 도서지역은 목적지가 속한 행정관청 등 협의된 환승지점까지 광역이동 지원 - 인천 : 강화, 옹진, 영종 (인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 운행함) - 경기 : 제부도, 대부도			
광역운행대수	지정차량 운행 : 30대 (장애인복지콜 6대 포함)	지정차량 운행 : 10대	지정차량 운행 : 60대	
운영요일(시간)	매일 운행 원칙 * 운행시간(07시~22시), 이용자탑승시간(07시~19시), 심야시간(22시~07시) 미운영			
신청접수방법	사전예약제 * 전일(접수마감 전까지)			
편도운행	편도원칙(출발지 지자체 차량 이용)			
운영시기	<b>2023. 12. 21.</b>			
이용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중증보행장애인)			
이용제한	(이용횟수) 인천·서울·경기 각 센터별 1일 편도 1회 (동승자수) 보호자(동승자) 2인이내 * 본인 포함 최대 3인			
관내요금	'23.12.21. ~ '24. 6.30.	- 관내동일 기본요금 1,500원(5km까지) · (5km~10km)1km당 280원 · (10km 초과) km당 70원 추가 * 도시철도요금의 3배이내	- 관내요금의 2배 기본요금:1,200원(2km까지) · (2km~10km) 1km당 200원 · (10km 초과) 5km당 300원 * 도시철도요금의 3배이내	- 관내동일 기본요금:1,500원(10km까지) · 5km당 100원 추가 * 경기도내 시·군 요금 상이
	'24. 7. 1. ~	기본요금 1,500원(5km까지) · (5~10km 이내) 1km당 300원, (10km 초과) 1km당 200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서울시 관할구역과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로 확대하는 것이나, 이 중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는 운영범위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동 개정조례안의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와 관련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92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서울시 관할구역과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로 확대하는 것이나, 이 중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는 운영범위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골자

- 가. 동 개정조례안의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 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와 관련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 3. 참고 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의원발의안)	수 정 안(전문위원실안)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생략) <u>&lt;신설&gt;</u>          ② ~ ⑤ (생략)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            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u>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u> 2. <u>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u> <u>&lt;신설&gt;</u>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1. ----- 2. <u>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u> 3. <u>제1호 및 제2호에도 불            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            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            이 따로 정한다.</u>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생략) <u>&lt;신설&gt;</u></p> <p>② ~ ⑤ (생략)</p>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u></li> <li>2. <u>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u></li> <li>3. <u>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u></li> </ol>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